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
----------	----

발의년월일 : 2010년 8월 10일
발 의 자 : 김형식 의원의 42인

1. 제안 이유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전동차 조립·제작 사업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철도운영 전문기관이 전동차를 조립·제작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성 및 위법성 논란이 있고,

동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여타 철도운영기관을 아우르는 별도 법인을 신설하는 등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전동차 조립·제작 관련 부분을 도시철도공사의 업무범위에서 삭제하고자 함.
-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공무원에게 실비이외에 월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에 특혜가 될 수 있고, 향후에 과도한 월정액 지급시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인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월정액 지급을 제한토록 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공사의 사업 범위에서 “전동차의 조립·제작”과 “철도차량의 성능 시험·제작검사”를 삭제함(안 제21조제1항제8호)

나.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정액을 제외한 수당 등의 실비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도시철도법」, 「지방공기업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동차·신호설비·전기설비·궤도토목 및 철도장비용품의 부품제작·조립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제16조(이사회) ①~⑥ (생략)</p> <p>⑦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⑧ (생략)</p>	<p>제16조(이사회) ①~⑥ (개정안과 같음)</p> <p>⑦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u>다만,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⑧ (생략)</p>
<p>제21조(사업의 범위) ① (생략)</p> <p>1.~7. (생략)</p> <p>8. <u>전동차의 조립·제작, 전동차·신호설비·전기설비·궤도토목 및 철도장비용품의 부품제작·조립,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제작검사</u></p> <p>9.~10. (생략)</p> <p>②~③ (생략)</p>	<p>제21조(사업의 범위) ① (생략)</p> <p>1.~7. (생략)</p> <p>8. <u>전동차·신호설비·전기설비·궤도토목 및 철도장비용품의 부품제작·조립</u></p> <p>9.~10. (생략)</p> <p>②~③ (생략)</p>